의 안 번 호		제 92 호		
의	결	2018년	월	일
연 월	일	(제	회)

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박 상 돈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8년 11월 21일

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상돈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 발의연월일 : 2018년 11월 21일

발 의 자 : 박상돈, 박형용, 심기보

육미선, 이상욱, 최경천,

임영은

1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인「치매관리법」 개정 등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고 불필요한 약어 표기를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 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문구 개정 (안 제2,3,6조)
 - (현행) "진료·요양" → (개정) "치매환자에 대한 보호·지원"
 - (현행) "치매상담센터" → (개정) "치매안심센터"
- 나. 불필요한 약어 표기 삭제 (안 제3조)
- 다.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(안 제7조)
 - (현행) "재위탁" → (개정) "재계약"
- 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다. 입법예고 : 해당없음 <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2호>

라. 협 의 :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

마. 비용추계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"를 "「치매관리법」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·지원함으로써,"로, "도민"을 "충청북도민"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"진료·요양 및"을 "치매환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치매에 관한"으로 한다.

제3조 중 "충청북도민(이하 "도민"이라 한다)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(이하 "치매관리 사업"이라 한다)"를 "충청북도민의 치매관리 사업"으로 한다.

제6조제3호 중 "치매상담센터"를 "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"로 한다.

제7조제3항 본문 중 "재위탁"을 "재계약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치매관리 및</u> <u>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</u>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 적 부담을 줄이고 <u>도민</u> 의 건강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<u>「치매관리</u> 법」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 적으로 시행·지원함으로써, <u>충청북도민</u>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·2.(생 략) 3. "치매관리"란 치매의 예방과 <u>진</u> 료·요양 및 조사·연구 등을 말 한다.	제2조(정의)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 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충청북 도민(이하 "도민"이라 한다)의 치 매관리에 관한 사업(이하 "치매관리 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한다.	제3조(도지사의 책무)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광역치매센터 설치·운영) 도	제6조(광역치매센터 설치·운영)
지사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치매	
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	
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	
장관과 협의하여 충청북도광역치	
매센터(이하 "광역치매센터"라	
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	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<u>치매상담센터</u> 및 「노인복지	3.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
법」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	
등에 대한 기술 지원	
4. ~ 8. (생 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
제7조(광역치매센터의 위탁) ①·②	제7조(광역치매센터의 위탁) ① · 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위탁기간은 계약일 부터 3년 이	③
내로 하되, <u>재위탁</u> 할 수 있다. 다	<u>재계약</u>
만,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	
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전까지	
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	
하여 위탁 연장의 적정 여부를 판	
단하여야 한다.	 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□ 치매관리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치매"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, 언어 능력, 지남력(指南力),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.
- 2. "치매환자"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.
- 3. "치매관리"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·연구 등을 말한다.
- 제16조의2(광역치매센터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1. 치매관리사업 계획
 - 2. 치매 연구
 - 3.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
 - 4. 치매 관련 시설 · 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
 - 5.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·훈련
 - 6.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 · 교육 및 홍보
 - 7.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
 - 8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
 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민간위탁"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수탁기관"이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- 3. "위탁사무"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.
- 4. "재계약"이란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이 끝난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- 5. "재위탁" 이란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 과의 위탁기간이 끝난 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